

부산광역시체육회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수당 지급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정 2016년 06월 15일

개정 2017년 07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처 운영규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및 희망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처 운영규정 제15조의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이상 남은 자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하며, 희망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 개폐 등에 따라 희망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정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회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직원의 경우에는 연장 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제4조(지급액) 명예퇴직수당과 희망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화재의 진압 등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봉급액의 4배의 범위 안에서 가산 지급한다.

제5조(지급)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 및 인원, 수당지급 신청기간, 수당지급 방법, 수당 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별표 제2호의 퇴직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의 심사 및 결정) ① 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직원

③ 회장은 예산 및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 결정한다.

제8조(지급대상자 통지) 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지급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과 선정, 지급절차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6.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17.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별표 제1호]

수 당 지 급 액 산 정 표(제4조 관련)

1. 명예퇴직

정년 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당시 월 봉급(본봉)의 반액×68%×정년 잔여월수
2. 5년 경과 10년 이내	•퇴직당시 월 봉급(본봉)의 반액×68%×[60+(정년 잔여월수-60)/2]
3. 10년 초과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희망퇴직 : 퇴직당시 월봉급(본봉) × 6개월

- 비 고
1. 수당지급액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사무처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제2호]

명예퇴직(희망퇴직) 신청서(제6조 관련)

명예퇴직(희망퇴직) 신청서

소 속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사무처 운영규정 제43조 제2항에 의한 명예퇴직(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